

강의료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3. 전임교원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4.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 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수는 대학(학부)과 각 대학원의 담당 시간을 통산하여 12시간으로 하며, 초과강의 시간계산은 **별표**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한다.(2018.8.24.개정, 별표 2018.9.1. 개정, 별표 20201.11 개정, **별표 2024.5.1. 개정**)

②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보직의 책임시간으로 한다.

③ 부속 및 부설기관 담당시간은 제외한다.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보직을 맡게 될 경우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적용한다.(2023. 3.1. 개정)

⑤ 교육부 또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평가가 진행될 경우 대학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여하는 연구위원에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고려하여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책임강의시간 조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23. 3. 1. 개정)

제4조(책임시간미달)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1, 2학기 통합하여 계산한다. 단, 2학기에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임용된 해의 2학기만으로 통합하여 계산한다.(2024.5.1. 개정)

② 강의 담당시간이 연간 총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교원은 2학기에 다음과 같이 환수조치하며 금액에 따라 3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환수할 있다.(2024.5.1. 개정)

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 15주* 미달시수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임교원 시간당 초과강의료* 15주* 미달시수

③ 개인 사유가 아닌 학교의 정책상(평가 또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의 경우로 인해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2024. 5. 1 개정)

④ 강의료 환수금액에 대한 시기 및 절차는 매 학년도 2학기에 강의료 산출부서에서 책임시수 미달된 교원의 환수금액의 산정이 확정되면 회계담당부서에 전달하여 환수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2024. 5. 1 개정)

제5조(강의료 지급 기준) 강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3.1.)

1. 강의시간 단위는 보통강의는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수업은 원칙적으로 45분을 1시간 수업으로 한다.)

2. 초과강의료는 실제 강의시간 수가 책임 시간 수를 초과한 교원에게 지급한다.

3.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4. 본교 행사(체육대회, M.T, 실습 등) 본교 사정 및 출장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

제6조(한계시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주당 한계시간은 별표와 같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
로 한계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3. 3. 1., 2023.12.1. 개정)

제7조(타 대학교 출강) ① 본교 전임교원이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
기 시작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타 대학 출강 시 본교 한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타 대학은 최대 2강좌만 허용 한다.
③ 책임시간의 일부감면을 받은 보직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대학(교)에 출강
할 수 없다.

제8조(강의료 지급 기준액)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
이 정한다.

제9조(특강료) 초빙강사(국내·외)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강사(국내·외)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증액 지불할 수 있다.
2. 외국인 강사의 강의료는 고용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료 지급을 별도로 한다.

1.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일 경우, 강의료 정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급한다.(개
정.2018.3.1.)
(단, 실습 및 토요수업 과목은 제외한다.)

제10조의2(공동수업 강의료) ① 공동수업의 강의료는 실제 담당할 수업주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지도 등 기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3. 3. 1. 신설)

② 공동수업을 개설한 학과는 수업주차별 담당교원을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3. 3. 1. 신설)

제11조(강의료 지급 기준일) 강의료 지급일은 4주 단위가 지난 첫 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원 주당 책임시간의 감면시간 및 한계시간(2024.5.1. 개정)

구분	직 위	책임시간	한계시간
1	부총장	9	15
2	처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9	15
3	학과장	11	21
4	부설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장	12	21
5	전임교원(정년트랙)	12	21
6	전임교원(비정년트랙)	5	21
7	전임교원(연구교수):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2	5
8	비전임교원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시간계산은 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전담영역이나 임무, 직책, 별도의 대내외 활동이 있는 경우 7시간으로 할 수 있다. 단, 연구교수의 책임시간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